

대구도심 폐교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use of School Facilities in the Downtown Deagu

허성훈* 이종국**

Heo, Sung-Hoon Lee, Jong-Kuk

Abstract

This study is processing to analyze the causes and to suggest the solution about extension of closed schools which comes from urban decay in the city. The meaning of this report is based on the purpose to help the substantial application of the equipments of closed schools.

This is used by groping the composite application scheme for improving the values of recycling facilities of closed schools which is according to abolition and amalgamation. To complete the purpose of this report, many documents, records and corroborative evidences were used to process this study. We suggest the program that is available to invest space. That is analyzed the environment and the social application that the building has is proper or not.

키워드 : 폐교, 재활용, 재가노인복지센터

Keywords : Closed School, Recycling Facilities, Welfare Center for the Old who stay at home

I. 서론

I-1. 연구 배경 및 목적

2010년 기준 대구광역시의 인구는 약 244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차지하며, 최근 5년간의 연평균증가율은 -0.14%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1990년 이후 지난 20년간의 인구추이를 살펴보면 인구수의 절대 규모는 약 54만 명 증가하였으나, 전국인구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중은 큰 변화가 없다. 연평균증가율은 1990년 이후 10년간 전국 평균증가율에 비해 월등히 높았으나, 2000년을 전후하여 증가율의 상대적인 둔화 또는 저하 경향이 뚜렷하다.

연령대별 구성비는 저연령층은 감소하는 반면, 고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전국 경향과 유사하여 한

국 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20대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5.91%에서 2010년 25.69%로 감소하였다. 20대 인구 역시 20.12%에서 15.59%로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20대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6.36%에서 2010년 26.10%로 감소하였으며, 20대 인구 역시 21.48%에서 15.93%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고령가구의 증가와 함께 노인층이 소외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의료와 복지는 필수적이며, 초보 단계에 있는 고령자 지원시설도 더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농어촌 지역의 폐교 현상은 더 이상 대도시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도시지역에서도 이미 폐교가 되었거나 폐교될 위기에 처해있는 학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폐교시설은 도

* 계명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 계명대학교 건축대학원 건축학과 부교수, 공학박사

(교신저자 : jklee@kmu.ac.kr)

심의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 학교가 이전하는 등의 요인으로 발생한다. 교육의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여 일정한 지역의 커뮤니티 역할을 담당하던 지역학교가 문을 닫는 것은 문화공간의 폐쇄를 의미하기도 한다.

도심공동화가 심한 대구 중구에서도 초등학교의 폐교에 이어 서구, 남구, 달서구 등의 중학교도 문을 닫게 되었다. 대부분의 폐교시설이 지역주민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고 매각 또는 대부되고 있고, 미활용 폐교에 대해서도 특별한 대책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 복지 관련시설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폐교를 선정하여 지역사회의 재가노인을 위한 복지시설로의 공간구성 계획안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폐교의 활용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1-2.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대구도심 폐교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첫째, 국내의 폐교시설의 현황을 파악하여, 폐교시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유형을 조사한다.

둘째, 문헌연구와 자료를 토대로 하여 실증적인 연구를 병행한다. 실증적인 연구는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의 폐교 관련 홈페이지를 이용하며, 폐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 문헌조사를 토대로 그 결과를 분석한다.

셋째, 폐교된 대상건물이 가지는 주위환경과 사회적 공간으로의 활용이 타당한지 분석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함으로써 지역을 재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이러한 최근의 시설경향에 맞추어 연구범위는 도심에 첫 폐교사례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감삼동 감삼중학교로 설정하고 폐교시설을 활용한 시설의 공간의 특징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II-1. 폐교시설의 정의 및 발생원인

폐교란 운영되던 학교의 폐지를 의미하며 특별법

으로는 1999.8.31 법률 제6005호로 공포된 내용으로 폐교라 함은 초·중등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로서 학생 수의 감소, 학교의 통폐합 등의 사유로 폐지된 공립학교를 말한다. 통·폐합의 유형은 본교 폐지, 분교장 폐지, 분교장 격하의 세 가지 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본교의 폐지는 한 학교가 인근 다른 학교로 흡수·통합되는 것을 말하며, 분교장 폐지와 분교격하는 각각 분교장을 폐쇄하여 인근 학교에 통합시키는 것과 본교로 흡수하는 것을 말한다.¹⁾

폐교시설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 아동의 감소로 인하여 지역 내 학교가 존립하기 어려운 상황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부차적으로는 지역 내 인구이동과 현대사회의 도시화의 영향도 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의 증대, 교육재정상,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의 개선 등을 위한 폐교, 통·폐합의 형태는 주로 지역 내 학교가 과소화 하여 분교를 본교에 통합시키거나 지역 개발을 위해 인근학교로 흡수, 통폐합하는 형식이다.

지난 1982년부터 시작되었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책에 의하여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교육부가 전국 시·도 교육청에 시달한 통·폐합 추진계획에 따르면 2002년까지 각 시·도 교육청이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추진하게 되어 있다. 초등학교 본교는 100명 이하, 분교장은 20명 이하의 학교는 통폐합 하는데 단, 1개면에 1개 본교는 유지하고,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은 지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하게 되어 있다.²⁾

이러한 정책은 국가가 단순히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국가예산의 절약차원에서 추진한 정책이 아니라 도서나 벽지의 소규모 학교 학생들에게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차원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책 시행 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사수렴의 기회를 상실하여 '두밀분교 폐교반대운동'과 같은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된 것도 사실이다.³⁾

1) 송월정(2006), 「폐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2) 교육부(1993), 「시·도 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자료」

3) 박부근(2001), 「폐교된 학교시설의 유스호텔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II-2. 폐교시설의 현황 및 활용유형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개한 폐교 재산 현황을 살펴보면 1982년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이 시행되면서부터 2010년 3월 폐교된 학교 수는 3,886개교에 이르고 이 중 1,885개교는 매각되었으며 1,042개교는 임대에 의해 교육, 사회복지, 문화,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및 기타시설과 자체활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미활용폐교로 매각, 대부, 자체활용 및 보존관리 되어 향후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폐교의 수도 459개교가 된다.⁴⁾

국내 폐교는 현재 비도시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나 도심지역에도 1% 내외의 폐교 발생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에 의해 학령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신규 학교는 지속적으로 건립되고 있어 차후 학교시설의 본격적 수급 불균형을 예상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현존 학교 건물 재고 중 경과 년 수 30년 이상의 물리적 개보수를 요구하는 연하에 들어선 물량이 60%를 넘어서고 있으며 도시공동화, 신규 개발지역에서의 학교 시설 과다 공급 등에 의해 최근 도시지역에 위치한 학교 등에서 공동화현상이 급속하게 나타났다.

표1. 시·도 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시도	매각 완료	활용현황			계	폐교 활용률
		임대	자체	미활용		
서울	1	-	-	-	1	100
부산	5	3	-	2	10	80
대구	12	7	6	1	26	96.15
인천	21	13	3	9	46	80.43
광주	6	6	2	-	14	100
대전	1	3	1	3	8	62.5
울산	8	6	7	-	21	100
경기	62	58	20	20	160	87.5
강원	122	230	19	40	411	90.27
충북	93	93	10	20	216	90.74
충남	172	25	17	42	256	83.59
전북	264	14	15	25	318	92.14
전남	477	53	34	167	731	77.15
경북	376	140	48	59	623	90.53
경남	261	153	32	67	513	86.94
제주	4	24	-	4	32	87.5
합계	1,885	1,042	459	3,386		

단위 : %

이는 지역재개발에 의한 상주인구 회복 등의 광역적 대책과는 별도로 폐교시설의 자체 활용방안의 대책이 요구된다 할 수 있다.⁵⁾

4) 교육과학기술부(2010),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자료

5) 최재철 외(2010),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

폐교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각 완료된 시설이 1,885개교로 55.6%에 해당되며 이는 더 이상 폐교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그 활용용도는 법적제한에 따라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육용 또는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 등의 시설로만 활용 할 수 있다.

표2. 전국 폐교재산 활용현황

구분	활용내용	폐교수	비율(%)	
매각완료	-	1,885	55.67	
	계	1,885	55.67	
활용현황	자체활용	214	6.32	
	대부 (임대)	교육시설	276	8.15
		사회복지시설	76	2.24
		문화시설	84	2.48
		공공체육시설	32	0.95
		소득증대시설	170	5.02
	기타	190	5.61	
계	1,042	30.77		
향후활용 계획	매각	166	4.90	
	대부	128	3.78	
	자체활용	19	0.56	
	보존관리	146	4.31	
	계	459	13.56	

매각이 이어 대부는 1,042개교(30.77%)를 차지하고 있어 대부분의 폐교재산 운영이 임대의 형태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임대의 경우 개인 및 민간 단체에서 최소 1년에서 10년 동안 지역 교육청으로부터 임대받을 수 있다. 임대된 폐교시설은 예술작가들이 창작공간 및 전시실, 학습 체험장, 노인요양 시설, 수련장, 펜션, 농산물 가공공장 등의 형태로 이용되고 있다.

II-3. 폐교시설의 문제점

폐교시설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령아동의 감소로 인해 학교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 주요 원인이 되겠지만, 부차적으로는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 및 교육효과의 증대 등을 꾀하기 위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⁶⁾

하지만 본문에서 다룬 지역의 폐교 원인에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나,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하는 경우이다.

도심지의 공동화 현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

시설 활용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6) 노경식 외(2008),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어은 현상이며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도시중심부에서 벗어나 살려고 하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따라서 도심지에는 거주민이 살지 않고 유동인구만 많은 직주분리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도심부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 수는 줄어들어 학교를 유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첨단화 되어가는 사회에서 전통만을 고수하며 낙후된 학교시설을 유지하는 것은 학생들에게는 교육적으로, 학교 측에서는 사실적으로 유지하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더 나은 교육환경과 첨단화를 위해서 학교를 이전하고 그에 따라 기존의 학교 부지는 폐교처리가 되는 것이다. 또한 정부 정책에 맞추기 위해 학교 측에 권유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폐교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도심지역의 폐교에 대해서 폐교 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III. 재가노인복지현황 조사 및 분석

III-1. 노인복지의 제도적 검토

사회복지서비스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이용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 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 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동법 제1조).

1) 보건복지증진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제1항).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4조제3항).

2) 노인사회참여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근로 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동법 제23조제1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 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제2항).

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동법 제23조의2 제1항).

4) 상담·입소 등의 조치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8조제1항).

III-2. 재가노인복지 서비스의 개념

국내에서 정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의미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양한 계층의 노인들이 자립적으로 풍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노인들의 욕구를 만족 시킬 수 있는 건강관리, 교양증진, 여가활동, 친목활동 및 노인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은 복지시설에 따라 구분될 수 있는데 노인의 상태와 대상에 따라 노인 주거복지시설, 노인 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법을 근거로 재가노인시설의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⁷⁾

현재 보건소에서는 노인복지법상 재가노인복지서비스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핵심서비스에 해당하는 방문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 내용은 크게 방

7)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9), 「노인복지시설현황」

문의료와 가정생활서비스로 분류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제공되는 서비스는 방문간호이며, 다음으로는 방문 진료이다. 현재 일부 보건소에서는 가정생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사업 중 가정봉사원이 파견하여 실시하는 서비스 내용과 유사하여 서비스의 중복 현상이 발생하므로 각 기관의 특성에 부합되는 특성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복 서비스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표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서비스 내용

구분	설치목적	비고
방문요양 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자
주간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
단기보호 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
방문목욕 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

노인이 오랫동안 거주하고 생활해온 친근한 지역사회에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이며, 이 개념은 하나의 시설 또는 근거리에 위치한 여러 개의 건물에서 주간보호, 단기보호와 장기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여 치매 환자나 일반 노인성 환자가 증상의 악화에 따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머물면서 서비스를 제공받고 연속적인 간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시설과 재가복지시설, 의료시설과 같은 연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이다.⁸⁾ 관련연구를 보면 많은 노인들이 자신이 살던 집에서 노후 생활을 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욕구로 인해 서구의 많은 나라에서는 1980년대 이후 노인보호에 대한 관심이 노인이 살던 기존의 주택에서 살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⁹⁾ 그러나 현재 지역사회보호를 위한 재가복지서비스의 대상은 저소득층, 극빈층으로 한정하고 있어 대다수의 일반인에게는 지역사회보호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으므로 보편적인 다수를 위한 서비스차원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III-3. 재가노인복지시설 현황

표4. 노인복지 생활시설 수 및 생활현황

종류	항목	2008	2009	2010
방문요양서비스	시설수	1,111	1,228	1,118
	입소정원	-	-	-
주야간보호서비스	시설수	621	714	786
	입소정원	10,627	12,768	14,086
단기보호서비스	시설수	217	288	67
	입소정원	2,833	3,950	706
방문목욕서비스	시설수	349	466	706
	입소정원	-	-	-

현재 노인복지회관의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방침과는 달리 시설 이용자의 증가에 따른 독립시설로의 주간보호시설이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저소득층 노인의 장기적인 병원 입원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발생의 한 대안으로 독립적이며 지역적인 주간보호시설이 요구된다.

단기보호시설은 주간보호시설과 같은 기능을 가지며, 단기간 노인을 보호하는 시설이다. 복지 서비스와 의료 서비스의 중간시설 역할을 하게 되는 단기보호시설은 노인으로서 하여금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가족을 떠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다는 것에 큰의의가 있다. 단기보호시설의 보호 기간은 45일 이내로 하며 연간 이용일수는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8) 조인숙 외(2007),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8권 1호, p.95~100.

9) 홍형욱 외(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p.27.

단기보호시설은 독립단기보호시설, 재가복지시설 독립형, 요양시설에 병설된 시설, 복지관부설 단기보호시설 유형으로 구분된다. 단기보호시설은 사회복지관이나 기타 요양시설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시설의 위치 또한 별도로 분리된 경우·층으로 분리된 경우 같은 층에 타 시설과 같이 위치한 경우로 조사 파악되고 있다.

단기보호시설의 본래 의미와 달리 현실적으로 단기보호시설은 장기 요양화 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장기요양시설의 절대부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의료 서비스와 보호복지 서비스를 연결해 주는 단기보호시설은 장기요양시설과 노인전문 병원 및 가정을 연결시켜주는 통합적인 요양시스템구축, 시설간의 서비스 연계 체계 등이 필요한 시설이다.

III-4. 고령화에 따른 폐교 공간 활용

폐교시설은 대부분 지역주민의 교육장소일 뿐만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중심적 공간이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성이 좋다.

또한 폐교를 노인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관련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⁰⁾

연령대별 구성비는 저연령층은 감소하는 반면, 고연령층의 비중이 증가하는 전국 경향과 유사하여 한국 사회의 고령화를 반영하고 있다.

표5. 대구시 연령대별 인구 비중

구 분	1990년		2000년		2010년	
	전 국	대 구	전 국	대 구	전 국	대 구
10대	35.91	36.36	28.99	29.28	25.69	26.10
20대	20.12	21.48	17.28	18.11	15.59	15.93
30대	17.08	17.50	18.01	17.90	17.45	17.02
40대	10.87	11.28	15.11	15.73	17.06	17.69
50대	8.37	7.58	9.39	9.46	10.91	11.38
60대	4.74	3.69	6.88	6.14	7.59	7.17
이상	2.91	2.11	4.34	3.37	5.71	4.72

단위 : %

전국적으로 20대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5.91%에서 2010년 25.69%로 감소하였다. 20대 인구 역시 20.12%에서 15.59%로 감소했다. 대구의 경우 20대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6.36%에서 2010년 26.10%로 감소하였으며, 20대 인구 역시 21.48%에서 15.93%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이상의 인구

10)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해당연도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현재 폐교를 관리하는 것이 어려워 단순히 철거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시키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재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폐교의 재활성화 방향설정에서 현재 폐교활용이 개인의 임대예 의해 행해지는 경우가 많아 활용면에서 공유성을 위해 취약한 점이 있으며, 폐교의 운영주체가 지자체 및 공익법인 등 공적자금의 의존도가 높을수록 사회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연수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성이 높은 용도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IV. 폐교활용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IV-1.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재가복지봉사센터, 노인종합복지관, 사회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등이 있다.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장소는 크게 노인이 생활하고 있는 집과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이다.

집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으며, 지역사회 내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에서 주간보호사업과 단기보호사업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재가보호와 시설보호의 중간단계에 해당하는 단기 보호서비스를 더욱 더 확충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폐교를 재가노인복지시설인 단기보호시설로 적극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부족한 노인요양시설의 공급부족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고 지역시설의 활용차원에서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인 단기보호는 주간보호와 함께 가정과 시설로 양분되어오던 노인보호서비스에 다양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이러한 서비스는 노인으로 하여금 가능하면 독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가족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¹¹⁾

11) 박성제 외(2000), 「노인 단기보호시설의 건축계획에 관한 연구」, 한국의료복지시설학회 논문집 제6권 10호, p.32.

표6. 노인보호 서비스의 범주

구분	생활서비스→		←의료서비스
	노인복지서비스	노인의료복지서비스	의료서비스
가정	가정봉사원파견	노인방문간호	왕진
통원	주간보호	주간보호 야간보호	외래 진료
단기	단기보호	단기보호	급성질환입원
장기	양로서비스	노년서비스	만성질환서비스

노인 단기보호시설은 단독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재가복지사업의 일환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부설된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많다. 기존시설의 병설형태로 설립될 경우 초기투자자가 많이 필요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시간으로 시작할 수 있고 기타부문과의 인력연계성이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설규모가 협소하고 노인들과의 공동사용으로 보호시설의 노인들에게는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다.

단독형태의 시설은 노인보호시설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가 유리하고, 시간적·심리적인 제약에서 다소 자유로울 수 있으므로 다른 형태의 공간운영방식보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과 실내 환경측면에서 바람직한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독립형은 독립된 단기보호시설이 주간보호,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의 다른 재가복지사업과 연계하여 구성되는 시설로 특성은 독립된 단기보호시설과 유사하고, 이들 재가복지사업과의 연계성 속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IV-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대적 변화

노인복지시설은 1980년대 이전의 경우 대부분 대가족세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시설보호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사회구조가 점차적으로 핵가족화가 되고 시설보호에 따라 사회적·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시설보호중심에서 가정보호지원으로 점차적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가정보호지원에서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으로 실시하게 되었다.

표7. 노인복지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이전	개정 이후	
노인 복지 법	노인요양시설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재가 노인 복지 시설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신설)

그 후 1989년 제1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을 사용하며 그 후로 여러 가지 형태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시작되었고, 1993년 12월 제2차 노인복지법 개정시 "재가노인복지"로 명시되었다. 2005년부터 재가노인복지사업 운영을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08년 4월부터 변경되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명칭을 통합하고 서비스 종류를 구분하게 된다.

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통합되고 변경됨에 따라 시설기준 또한 새롭게 변경되었다. 기존의 거실 및 침실면적의 경우 1인당 5㎡이상이었으나 주간보호시설은 기준이 없고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1인당 6.6㎡를 확보하며 합숙침실은 1실 정원의 경우 4명이하가 되도록 변경되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요시설 변경사는 다음과 같다.¹²⁾

표8.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요변경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시설 면적	- 주간보호, 단기보호 5인까지 90㎡, 5인 초과시 1인당 6.6㎡이상의 공간추가 확보 - 방문요양 : 사무실 16.5㎡이상	
거실 및 침실 면적	주간보호 : 거실에 대한 별도 면적 기준이 없으며 1인 추가시 추가확보되는 공간은 거실로 합 단기보호 : 이용자 1인당 침실면적 6.6㎡	
시설 정원	주간보호 단기보호	5인 이상

12) 최재영 외(2010),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8권 제2호, p.45.

IV-3.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규모계획

노인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을 복합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규모산정을 위해 필요한 단위실의 면적을 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시설모델로 선정된 감삼중학교의 경우 시설위치는 지역적으로 종합병원에서 4분(1.09km) 정도,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15분(5.28km) 정도의 거리에 입지하고 있다.

표9.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법적 기준

실명		노인용양시설	노인전문요양시설
거실	합숙용	5.0㎡/인	6.6㎡/인
	동거용	-	-
	독신용	-	-
식당 및 조리실		●	●
세면장 및 목욕실		●	●
오락실		●	●
의무실		●	●
물리치료실		●	●
일광욕실			●
화장실		●	●

폐교의 시설현황에서 건물현황은 교실건물이 1984년도에 철근콘크리트라멘조 구조로 건축되었다. 외부공간인 운동장은 남서방향으로 52m, 북동방향으로 96m의 길이로 구성되어 있다.

시설모델로 제안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정원은 단기보호노인 10명, 주간보호노인 6명을 기준으로 전체 이용 정원은 16명이다. 근무하는 직원은 9명으로 계획하였으나 야간 당직 의료인력을 고려하면 간호사 1명이 더 필요하다.

표10.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법적 기준

실명	면적(㎡)	산출근거
사무실	34.50	1인당 면적 5㎡기준(5㎡*7인)
상담실	5.60	1.6㎡*3.5(자원봉사자실 겸용)
린넨실	5.44	각종 수납장고
2인실	31.05	4.5㎡*6.9㎡(개별욕실 및 화장실 포함)
간호사실	13.60	1인당 6㎡기준(6㎡*2인)+여유공간
기능훈련실	34.50	기존시설 평균면적(30.25㎡)+통로공간
물리치료실	14.00	7.0㎡/병상 기준으로 2병상 설치
주간보호실	41.40	36㎡(6인 요양실 : 6㎡*6㎡)+이동공간
세탁실	6.21	2.3㎡*2.7㎡
탈의실	5.40	2.0㎡*2.7㎡(탈의실을 거쳐 욕실 진입)
욕실	12.42	4.6㎡*2.7㎡
화장실	5.76	남/녀 구분(주간보호노인 및 직원용)
조리실	10.80	식당 면적의 20% 정도
식당	47.61	1인당 면적 2.5㎡기준(2.5㎡*16인)

노인단기보호시설의 거실 인원은 2인실을 기준으로 계획하며, 주간보호실은 병상 배치를 고려한 요양실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보호시설의 다인실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야간에는 단기보호시설의 보호노인을 위해 야간 당직 간호사가 근무할 수 있는 간호사실을 별도로 구성하여 당직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V. 결론

본 연구는 학령아동 감소로 인하여 발생하는 폐교 문제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관련 재가복지시설의 부족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폐교활용에 대한 연구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시설의 재활성화는 지역의 중심시설로서 경제적 효율성과 지역주민의 소통 세대 간의 교류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한다.

둘째, 대구의 20대 인구는 20.12%에서 15.59%로 감소했고 20대 미만 인구의 비중은 1990년 36.36%에서 2010년 26.10%로 감소하였다. 반면, 3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고령층으로 갈수록 증가 현상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현재 폐교를 단순히 철거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 생활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변화에 적응시키며 이익이 될 수 있도록 재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재가노인복지센터의 이용정원을 단기보호노인 10명, 주간보호노인 6명으로 설정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 독립형으로 계획하였을 경우 법적인 시설 기준을 고려하면 사무실, 상담실, 린넨실, 간호사실, 기능훈련실, 물리치료실, 주간보호실, 세탁실, 탈의실, 욕실, 화장실, 조리실, 식당 겸 다목적실이 각각 1개, 단기보호를 위한 거실이 5개가 필요한 것으로 구성하였다.

넷째, 대구도심에 위치한 감삼중학교 폐교의 교사를 선정하여 단기보호시설과 주간보호시설이 복합된 독립형재가노인복지시설의 공간구성에 관련된 재활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교사 이외 시설인 숙직실은 지역거주 노인들의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운동장은 치유농원으로 구성하여 노인들과 지역주민들간의 사회적 교류가 가능하도록 활용한다.

참고문헌

1. 최재영 외(2010), 「노인복지시설과 학교시설의 복합화를 위한 공간계획 연구」, 청소년시설환경학회 제8권 제2호, p.45.
2. 송월정(2006), 「폐교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3. 교육부(1993), 「시·도 교육청 관리국장 회의 자료」
4. 박부근(2001), 「폐교된 학교시설의 유스호텔화 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5. 교육과학기술부(2010), 시도교육청 폐교재산 현황 자료
6.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타)일부개정 2009.6.9. 법률 제9758호] 제2조 1항
7. 최재철 외(2010), 「사회취약계층 주거지원을 위한 폐교시설 활용계획」,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8. 노경식 외(2008), 「폐교재산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논문집
9. 광인순(2007), 「주거복지와 지역사회보호」, 한국주거학회 학회지 제1권 제3호, p.7.
10.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2009), 「노인복지시설현황」
11. 조인숙 외(2007), 「Aging in Place를 위한 재가 노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 논문집 제18권 1호, p.95~100.
12. 홍형욱 외(2004),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지식마당, p.27.

(논문투고일 : 2011.10.28, 심사완료일 : 2011.12.12,
게재확정일 : 2011.12.19)